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5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남인순·박정현·채현일
윤종균·김현정·김남근
이재강·김영배·모경종
전종덕·전진숙 의원(11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본원칙) 국가나 위원회 등이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 배상·보상 또는 명예 회복 조치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등의 고통,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해자등에 대한 차별과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7392호”를 “제○○○○○호”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직권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

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본원칙) <u>국가나 위원회 등이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 배상·보상 또는 명예 회복 조치 등을 할 때</u>
6.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u> <u>1.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2. 피해자등의 고통,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u> <u>3. 피해자등에 대한 차별과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 ○○호----- -----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경우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직권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 -----

-----5년
간-----.

②

3년

③ (현행과 같음)